

15. 改正建築法令 運用實態現場確認點檢

資料提供：建設部

- 건설부는 지난 '92. 6.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건축법령중 경미한 설계변경의 사후일괄 신고제도등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된 여러제도가 일선 시·군·구에서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매월 관계직원을 현지에 출장토록하여 확인 점검하기로 하였다.
- 지난 8월에는 서울특별시, 강원도 및 경기도를 대상으로 건축신고업무처리실태를 점검한 바 있으며 이어 9. 29부터 10. 1까지는 인천직할시와 충청북도를 대상으로 경미한 설계변경의 사후일괄처리제도의 운용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, 10월이후의 매월 점검대상 시·도와 주요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다 음 -

- 10월 : 건축허가시 타법물상의 인, 허가 의제처리제도 운용실태
(대전직할시, 충청남도, 전라남도)
 - 11월 : 시, 도 및 시, 군, 구 조례제정 추진실태(광주직할시, 전라남도, 경상남도)
 - 12월 : 건축허가시 법령에 의무화 되어 있지않은 사항을 임의로 운용하는 실태
(부산직할시, 대구직할시, 경상북도)
- 건설부는 이 점검결과에 따라 법령에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거나 법령의 취지에 반하여 운용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토록하고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을 보완하거나 지침을 시달하는등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조기에 개정건축법령이 정착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